E - 184 - 2021

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o 작성자 : 황명환

o 통합제정자: (전)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상원

o 제·개정 경과

- 2021년 9월 전기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통합제정)

o 관련규격 및 자료
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(보호구의 지급 등)
-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절차에 관한 고시
- Protective clothing for users of hand held chain saws, BS EN 381-11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설명서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E - 184 - 2021

#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지침

### 1. 목적

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,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인체 보호구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작업자의 상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 및 안전장화를 제조·선정·착용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상체 보호구(upper body protector)"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에 대해 최소 한으로 저항할 수 있는 상반신용 보호의류를 말한다.
  - (나) "보호재료(protective material)"란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효과에 대해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복에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.
  - (다) "보호범위(protective coverage)"란 상체 보호복에서 보호재료로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.
  - (라) "특정 보호영역(specified protective area)"이란 이 지침에서 정의한 필수 보호영역을 말한다.

## E - 184 - 2021

- (마) "어깨의 상부(top of shoulder)"란 <그림 1>에서 나타내는 상체 보호복의 어깨 상부를 말한다.
- (바) "발 보호구(Foot protector)"란 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발과 다리 하단부를 보호하는 제품을 말한다.
- (사) "발 보호(Foot protection)"란 하나 이상의 발 보호구에 의해 발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.
- (아) "안전장화"란 장화가 손상되지 않는 한 보호재질이 절대 제거될 수 없는 구 조로 제조된 발 보호구를 말한다.
- (2)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지침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보호복에 관한 기술기준

#### 4.1 일반사항

- (1) 어떠한 보호장구도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.
- (2)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보호장구를 적절하게 설계·제조하여 착용하면 경험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보호할 수 있다.
- (3) 보호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확보할 수 있다.
  - (가) 전기톱의 체인부위는 안전덮개로 방호조치하여 사용한다.

#### E - 184 - 2021

- (나) 섬유는 구동 톱니와 블록체인 구동부 속으로 체인에 의해 말려들어 간다.
- (다) 섬유는 절단에 대한 높은 저항력과 회전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으며, 이 로 인해 체인의 속도를 감소시킨다.
- (4) 전기톱 작업자의 상체 보호복은 작업수행 중 안전하고 작업에 적합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#### 4.2 무해성에 관한 요구사항

- (1) 전기톱 작업자의 상체 보호복은 제조자 사용지침에 따라 사용할 경우 사용자 또 는 다른 사람을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설계·제조되어야 한다.
- (2) 상체 보호복은 피부접촉에 의한 위험성이 없도록 제조자가 제품에 포함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농도를 표시하여야 하며, 이를 통해 알레르기 또는 피부 민감성 의 원인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.
- (3) 상체 보호복은 찰과상, 타박상,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, 거친 표면 등이 없어야 한다.

#### 4.3 인간공학적 요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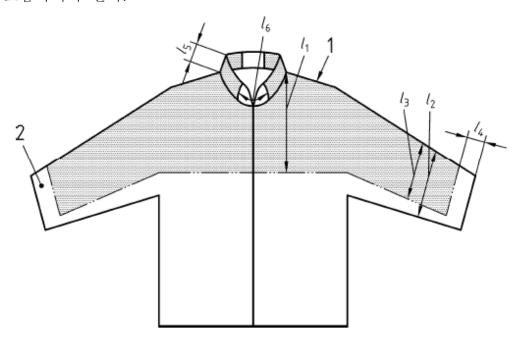
- (1) 상체 보호복은 가능한 한 가벼워야 한다.
- (2) 상체 보호복은 설비나 관목에 얽힐 수 있는 부착물이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.
- (3) 소매 끝단은 동여매어야 하며, 소매 끝부분이 조금 짧도록 제조되어야 한다.
- (4) 특정 보호범위의 외피는 방수 처리되어야 한다.
- (5) 보호복을 착용하는 경우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,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.

E - 184 - 2021

## 4.4 상체 보호복의 특정 보호범위

#### (1) 상체 보호복 앞면

- (가) 특정 보호범위는 <그림 1>과 같이 보호복 가슴둘레의 최소 25 %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어깨 상부에서 하부로 지정되어야 하며, 보호영역은 구분이 분명하게 제조하여야 한다.
- (나) 보호범위는 소매 끝단에서 70 mm 이내, 소매 전면의 상부로부터 80 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


1 : 어깨의 상부

2 : 소매 끝단

1: 보호복 앞면에서 최소 보호범위의 높이

l<sub>2</sub>: 소매의 폭

l3: 소매 전면의 보호범위(l2의 최소 80 %)

l4: 보호되지 않는 소매, 폭 70 mm 미만

l<sub>5</sub>: 옷깃의 보호범위 높이, 최소 30 mm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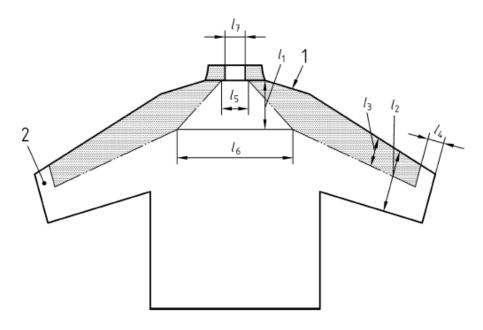
l<sub>6</sub>: 옷깃에서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범위, 최대 80 mm

<그림 1> 특정 보호범위 -상체 보호복 앞면

E - 184 - 2021

#### (2) 상체 보호복 뒷면

- (가) 보호범위는 <그림 2>와 같이 소매 끝단에서 70 mm 이내, 뒷면의 어깨 상부와 소매 뒷면의 상부로부터 40 %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(나) 뒷면의 중앙 부분에는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공간을 준다. <그림 2>에서 나타난 허용공간  $l_5$ 는 가장 작은 치수의 보호복 가슴둘레 9 % 미만이어야 하며,  $l_6$ 는 가장 작은 치수의 보호복 가슴둘레의 35 % 미만이어야 하다.



1 : 어깨의 상부

2 : 소매 끝단

 $l_1$ : 보호복 뒷면에서 최소 보호범위의 높이

l2: 소매의 폭

l3: 소매 뒷면의 보호범위(l2의 최소 40 %)

14: 보호되지 않는 소매, 폭 70 mm 미만

15 : 어깨 상부에서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범위

 $l_6$ : 어깨 상부로부터  $l_1$  아래에 있는 영역에서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범위

l<sub>7</sub>: 옷깃에서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범위, 최대 80 mm <그림 2> 특정 보호범위 -상체 보호복 뒷면

E - 184 - 2021

## (3) 옷깃(선택사항)

- (가) 보호용 옷깃(Collar)이 부착되는 경우, 보호범위는 목의 각 부분으로부터 최소 한 100 mm의 길이를 포함하여야 한다.
- (나) 보호재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허용공간은 앞면의 경우 중심으로부터 최대 80 mm, 뒷면의 경우에도 중심에서 80 mm까지 허용이 된다.
- (다) 보호재료의 최소 높이는 30 mm 이상이어야 한다.
- (4) 상체 보호복을 잠그는 부분 또는 연결부분
- (가) 상체 보호복을 입거나 벗는 경우 전면 중앙에 보호복을 잠그는 부분 또는 연결부 분을 부착할 수 있다.
- (나) 보호복을 잠그는 경우 보호재료의 모서리 간의 간격은 최대 30 mm 미만이어야 한다.
- (다) 보호복 본체와 옷깃 사이의 연결 부위에서는 보호재료 간의 간격이 8 mm 미만보다 작아야 한다.

### 4.5 치수의 변형

보호복을 세탁한 후 변형되는 치수의 측정허용 값은 원래 치수의 6 % 미만이어야 한다.

#### 4.6 전기톱 절단에 대한 내력

전기톱으로 보호재질 시편을 절단 시험하는 경우 어떠한 시편에서도 절단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.

E - 184 - 2021

4.6 보호복에 부착하는 보호패딩(Protective padding)

- (1) 보호재료는 상체 보호복에 영구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.
- (2) 보호재료의 부착은 소매 끝단을 제외하고는 보호재료의 모든 가장자리를 따라 연속 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.

4.7 전기톱의 체인속도에 따른 보호등급

이 지침에서 적용하는 상체 보호복은 전기톱의 체인속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된다.

(1) 등급 0 : (16.0 ± 0.2) m/초

(2) 등급 1 : (20.0 ± 0.2) m/초

(3) 등급 2 : (24.0 ± 0.2) m/초

(4) 등급 3 : (28.0 ± 0.2) m/초

#### 4.8 표시

휴대형 전기톱 사용 시 착용하는 보호복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표시 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.

- (1) 이름이나 상표 또는 제조업체나 법적 책임을 갖는 회사의 식별 방법
- (2) 명칭 또는 회사의 모델번호
- (3) 일련번호

E - 184 - 2021

- (4) 제조년월일
- (5) 제품 승인규격
- (6) 상체 보호복의 크기 또는 치수
- (7) 속도등급 : 이 정보는 전기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외부, 가능하면 그림문자의 틀 밖에 표시하여야 한다.
- (8) "만약 보호재료가 손상된 경우에는 보호복을 폐기하시오"라는 내용의 문구
- (9) 세척·세탁을 잘못한 경우에 대한 경고
- 4.9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

휴대형 전기톱 사용자를 위한 상체 보호복은 이를 사용하는 해당국가의 언어로써 제 조자에 의해 명확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, 이에는 최소한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 어야 한다.

- (1) 상기 4.8항 '표시'에서의 정보
- (2) 제조업체 또는 법적 책임이 있는 회사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- (3) 세탁 후 젖어 있을 때의 변형예방을 위한 주의사항
- (4) 보호복에 대한 올바른 사용방법
- (5) 개인이 보호복을 줄이거나 수선하는 경우 허용이 가능한 부분
- (6) 보호복을 수선하는 경우, 특히 보호재료는 절대 수선할 수 없다는 내용
- (7) 보호범위 및 재료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변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한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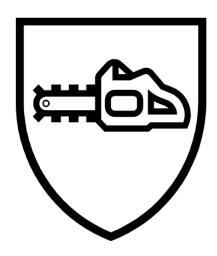
E - 184 - 2021

파손되면 보호복은 반드시 폐기시켜야 한다는 내용

- (8) 보호복을 폐기하는 기준
- (9) "모든 위험에 대해 보호되지 않습니다."라는 내용의 문구
- (10) 상체 보호복 치수별로 거의 100 g에 가까운 무게
- (11) "상체 보호복을 완전히 잠가서 착용할 때 최대의 보호기능이 확보된다."라는 내용의 문구
- (12) 속도등급에 대한 설명

## 4.10 그림문자(Pictogram)

(1) 본 기술지침에서의 요구사항과 국제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상체 보호복에는 <그림 3>과 같은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.



등급 X(보호등급)

<그림 3> 전기톱 사용 시 상체 보호복에 대한 그림문자

(2) 그림문자는 옷의 잘 보이는 부분에 위치하여야 하며, 크기는 최소 30 mm × 30 mm 이상이어야 한다.

## E - 184 - 2021

(3) 보호등급은 전기톱을 나타내는 그림문자 틀 외부(Outside)에 표시하여야 하며, 가능하면 틀 밖(Shield)에 별도로 표시하는 것이 좋다.

## 5. 안전장화에 관한 기술기준

#### 5.1 일반사항

- (1) 어떠한 보호장구도 휴대형 전기톱의 절단사고에 대하여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다.
- (2) 휴대형 전기톱의 사용 시 보호장구를 적절하게 설계·제조하여 착용하면 경험적으로 상당한 수준까지 보호가 가능하다.
- (3) 보호는 주로 다음의 세 가지 기본원리를 적용하여 얻을 수 있다.
- (가) 전기톱의 체인부위는 안전덮개로 방호조치하여 사용한다.
- (나) 섬유는 구동 톱니와 블록체인 구동부 속으로 체인에 의해 말려들어 간다.
- (다) 섬유는 절단에 대한 높은 저항력과 회전에너지를 흡수하는 특성이 있으며, 이 로 인해 체인의 속도를 감소시킨다.
- (4) 안전장화는 신발 앞창이 200 J의 충격에너지에 견딜 수 있는 안전화의 요구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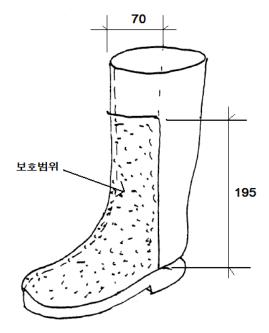
## 5.2. 안전장화에 대한 최소 보호범위

안전장화의 전면 최소 보호범위는 <그림 5>와 같이 폭 70 mm, 높이 195 mm 이상이어야 한다.

E - 184 - 2021

## 5.3 안전장화의 요구성능

안전장화의 보호영역은 20 m/초의 전기톱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.



<그림 5> 안전장화의 최소 보호범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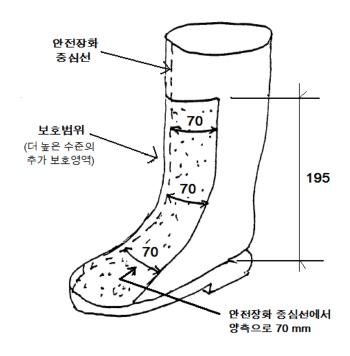
## 5.4 추가 안전 요구사항

상기 5.3항 "안전장화의 요구성능" 보다 더 높은 성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<그림 6>과 같이 안전장화의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70 mm의 추가적인 보호영역을 갖는 것도 가능하다.

#### 5.5 표시

전기톱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화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지속적으로 표시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.

E - 184 - 2021



<그림 6> 안전장화의 추가 보호영역

- (1) 제조자·수입업자의 이름 또는 상표
- (2) 형식번호 또는 모델번호
- (3) 안전장화의 치수
- (4) 기타 국제규격에서 요구하는 내용의 표시

## 5.6. 제조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보

전기톱 사용자를 위한 안전장화에는 이를 사용하는 해당국가의 언어로써 명확한 지시사항이 기술되어야 한다. 이러한 지시사항에는 최소한 다음의 정보가 포함된다.

- (1) 제조자·수입업자의 이름, 주소 및 전화번호
- (2) 형식번호 또는 모델번호

# E - 184 - 2021

- (3) 잘못된 취급에 관한 경고
- (4) 폐기기준
- (5) "완벽한 보호를 보장하지 않는다."라는 내용의 기술
- (6) 기타 표시에서 주어진 정보

## 5.7 그림문자(Pictogram)

안전장화에는 신발 양측 바깥 부분에 <그림 3>과 같은 그림문자가 표기 및 부착되어야 한다.